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육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항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제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전에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보다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3. 금융·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 등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등 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하는 보증부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하는 대출금의 이자수익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하는 보증부 대출의 이자수익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16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㉓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개정 과목별 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명세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총수익금액(II + III + IV)	01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II.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IV.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1. 수입이자	03		1. 국외사업장수익	41	
2. 수입할인료	04		2. 이익으로 보지 않는 자산 · 부채평가 이익	77	
3. 수수료수익	05		3. 비용환입액	78	
4. 배당금수익	06		4. 채권매각이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79	
5. 보증료수익	07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일차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80	
6.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08		6. 국고보조금	43	
7. 위탁자보수	10		7. 보험차익	44	
8. 이익분배금	11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9. 신탁보수	12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10. 보험료수익[(1) - (2)]	13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8	
(1)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주입된 보험료	49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세보험수수료 · 출세이익수수료 · 이체조서비	50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73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53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74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문배수수료	54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75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55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76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금액[(1) + (2) + (3)]	56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나목(③ - ④)	16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가목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③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17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나목의 가맹점수수료		
④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18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다목의 청구할인 금액		
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의4[(1) - (2)]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면역어를 재할인 이차,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차 및 수수료	57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4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로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58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4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금액	59	
13. 수입임대료	19		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1) + (2)]	60	
14. 고정자산처분익	20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61	
15. 유질물처분익	2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62	
16. 수입대여료	24		2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1) + (2) + (3)]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7호의2	83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18. 기타영업수익	25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19. 기타영업외수익	26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다목의 거래 수익금액		
III. 비과세 수익금액	3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 ----- -----.	
1. ~ 5. (생략)	5의2.·5의3.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4.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6. ~ 8. (생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 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6. ~ 8.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전에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보다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

11. · 12. (생략)

<신설>

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
가 부담하는 금액

11. · 12. (현행과 같음)

13. 금융·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 등의 이자
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
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등 재정경제부 고시
로 정하는 보증부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하는 대출금의
이자수익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

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
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
가 「은행법」에 따른 은
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③ 삭 제 ④ ~ ⑧ (생 략)	<u>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u> <u>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u> <u>따라 중·저신용자에 대한</u> <u>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보증</u> <u>을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u> <u>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u> <u>정하는 보증부 대출의 이</u> <u>자수익</u> ④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